제 안 설 명 서

□ 지역경제국장 유병현 입니다.

□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

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

○ 조례명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를 "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" 로 개정하여 이제까지 운용자금에만 적용되던 것을 구조개선 시설자금 조성 및 지원범위까지 정하는등 포괄적 개념으로 하였으며

○ 융자금 신청기관을 시장·군수에게만 신청토록 규정한 것을 증평출장소장과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항시 파악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도지회장, 청주·충주상공회의소 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기업자금의 수요증대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출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이내로 확대하였고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~3%에서 3%내외의 저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이제까지는 운영자금만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.

ㅇ 신설된 내용을 설명드리면

· 먼저 융자대상업체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 융자대상 업체와 동일하게 하여

- 자동화사업 추진 중소기업
- 정보화사업 추진 중소기업
- 개발기술 사업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
- 자동화, 정보화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중소기업
- 자동화, 정보화, 개발기술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중소기업
- 기타 도지사가 성장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등으로 규정하고

· 융자 조건은

- 융자금리는 연 6 %,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, 융자금 지원은 소요자금의 100%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· 융자대상자 요건과 선정기준으로는
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제조업체로서
-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하고

-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업체를 요건으로 하였고
- 선정기준은 기업의 건실도를 평가한후 성장 가능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 평가토록 하였으며

- 모기업(대기업)의 추천 또는 사업파급 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가점을 주도록하는 선정기준을 두었습니다.

○ 이상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○ 현재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도록 동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.